

조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
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, 사실 이런 개량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축대를 쌓는다는가 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노동으로 한다든지, 이웃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든가, 어떤 물건을 사다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증빙을 챙기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매각가액의 1/10 정도의 금액은 공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.
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可決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 이상입니다.
 ○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.
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도록 하겠습니다.
 ○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이 보고드리겠습니다.
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.

(報告)

가. 개요
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공유재산을 개척·매립·간척 또는 조립하거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이주된 자를 포함한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를 인정하고(안 제37조의2제1항)
 - 개량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개량비용 산정시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간후 토지에 대한 매각가액의 10분의 1이내로 하며(안 제37조의2제2항)
 - 개량비의 결정은 매수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심사·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.(안 제37조의2제3항)
 - 그리고 개량비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되, 예산형편상 1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

- 하고(안 제37조의3).
 - 개량비 관련 개정조례안을 1983년 1월 27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후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입니다.
 - 나. 개량비 산정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.(안 제37조제2항)
 - 개량비용 산정시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간후 토지에 대한 매각가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보상평가지침 제 50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 그 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간후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의 3분의 1(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경우는 10분의 1)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개량비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간후 토지에 대한 매각가액의 10분의 1이내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.
 - 다만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7조제2항에 의하면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·조립·부속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·시설비·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산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을 근거로 집행부측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 - 다. 부칙 제2조(적용례)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.
 - 동 개정조례안의 적용시점을 1983.1.27부터 소급적용함에 있어서
 -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, 기공유지를 매수완료한 자들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 ○委員長 文錫珍 이상으로 提案說明,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.
 동 案件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財務局長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